

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63592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이행청구]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5. 2. 24.

판결 선고2015.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C은 소외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각 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D과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권은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각 주주명의를 D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고당판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1994. 9. 24.부터 1996. 11. 8.까지 총 11회에 걸쳐, 소외 회사가 제일은행 등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각 대출금채무 등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가 1997. 1. 13. 당좌부도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70469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1,491,202,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과 E, D의 관계 및 증여

1) 피고회사는 1999. 2. 19.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 4. 12.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2) D은 이혼한 후 2004. 경 E과 재혼하였다. 피고 B와 피고 C은 D과 전처 사이의 자녀이고, 소외 G, H, I는 E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이다.

3)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9. 9. 23.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9. 9. 23. 법무사 J에 의하여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E은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중 22,450주는 피고 B에게, 22,500주는 피고 C에게 2009. 9. 20. 각 증여하였다.

4) E은 선천성 심방중격결손증 등의 지병이 있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였는데, 2009. 8. 22.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09. 9. 2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호증(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및 이 사건 주식 증여(이하 이를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는 E의 의사에 반하여 D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3/9 지분에 관하여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는 D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확인과 그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가 E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므로 원고의 대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위 지병으로 인한 고열 등을 호소하며 2009. 8. 22.경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하였으며 2009. 8. 27.부터 같은 해 9. 3.까지 일반인의 면회가 제한된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호증의 6,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09. 9. 4.부터 사망시까지 일반인의 면회가 제한 없는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통증에 따른 고통이나 불편함이 있었을 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음식섭취가 가능했으나 식욕부진으로 수액만을 주입하는 상태였는데, 특히 이 사건 각 증여가 발생한 2009. 9. 20.을 전후해서는 통증이나 불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의료진에게 호소하거나 호흡에도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 증여에 관한 업무는 기존부터 피고 회사의 등기 등 업무를 맡아온 법무사 J이 E의 의뢰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J이 E의 병실에 찾아와 증여계약서에 E으로부터 직접 도장을 날인받았고, 이 사건 확인서면에 E의 우무인을 날인 받았던 점, 이 사건 주식 증여에 관한 업무는 피고 회사의 고문변호사인 K이 E의 의뢰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K이 입회한 가운데 증여계약서에 E으로부터 직접 도장을 날인받고, K이 입회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는 E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각 증여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대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민수

판사민경현

판사이규석

별지